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議 案	14
番 號	

提出年月日 : 1992. 4. .

提 出 者 : 束 草 市 長

1. 제안 이유

- 탈루·은의세원 발굴 및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탈루·은의세원 발굴의 활성화로 지방재원 확보에 주력.

2. 주요 골자

- 탈루·은의세원 발굴 및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안) 별표 1)
- "과년도 미수액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 (안 제2조)

3. 참고 사항

-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시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자
2.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자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포착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속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 부과세액의 100분의 5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목의 부과세액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시 및 동에 전화,서신 방문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동장은 "지방세은닉·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등장은 매월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표

구 분	포 상 금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	기본금 1만원
부과세액이 1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금 1만원 + 부과세액의 7.0 %
부과세액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금 6만원 + 부과세액의 6.0 %
부과세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기본금 16만원 + 부과세액의 5.0 %

단, 신고자의 1회분 포상금 최고한도액은 200만원

지방세 은익·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신고자							남·여	전 화					
신고사항	탈루·은닉세원 정보제공,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타 세정일반사항												
신고물건 내역	물건명												
	소재지												
	소유자	성명						세원존재	도내세원 도의세원				
		주소											
신고내용													
처리결과	은닉·탈루세원 신고						부과·징수·기타 세정신고						
	조사일시												
	사실조사 (과세자료)												
	부과여부판단												
	부과내역	부과금액	계										
		산출근거											
		부과일			납부일								
	신고자 지급상황	지급일시					지급자						
	금액					수령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월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문서번호 22670-

수 신 속 초 시 장

참 조 세 무 과 장

발신

동 장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비 고
		세 액	가 산 금	계		

첨 부 : 은닉 · 탈루세원 발굴 내역서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은닉 · 탈루세원 발굴 내역서

기관명 : 동

제 보 자		세 목	납 기	건 수 발굴세액	포상금	징수월일	비 고 (발굴내역)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자 : 동 사무장 (인)

확인자 : 동 장 (인)

●속초시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1974. 4. 30]
조례 제392호

개정 1977. 2. 9 조례 제513호
개정 1982. 4. 28 조례 제808호
개정 1984. 1. 24 조례 제919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 3 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제 6 편 세 무 제 2 장 징수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575 (대)

제 6 편 세 무 제 2 장 징수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576 (대)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4. 1. 24 조례 제919호>

부 칙 (1974.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이 조례는 198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 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징수세액의 100분의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징수세액의 100분의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징수액의 100분의5

6.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1건당 3만원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 4 조 (대장비치) ①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및 "숨은세원 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 5 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동장은 매분기별 징수포상금지급 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 24 조례 제919호>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징수 월일	징수자 직급성명	징 수 액				체 납 자		징장 월일	확인	비고
		년도	납기 번호	고지서 번호	과목 징수액	주 소	성명			

190mm×268mm(신문용지549mm)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

납기 월일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징장 확인	비고
	직 급	성명				주 소	성명			

190mm×268mm(신문용지549mm)

(별지 제3호서식)

()분기집사포상금신청서

수 신 속초시장

참 조 세무과장

발 신 ○○동장

구	분	전수	금 액			포상금
			세 액	가산금	계	
과년도채납액징수						
숨은세원발굴	과 표 초 과					
	미 등 기					
	등기 1년경과					
	무 단 점 용					
계						

첨부 1. 과년도 채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 내역 1부

190mm×268mm(신문용지54mm)

제 6 편 세 무 제 2 장 징수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과년도채납액징수내역

세무과장

㉑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전수	포상금	비 고
소속	직명	성명	금액	가산금	금액			

190mm×268mm(신문용지54mm)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숨은세원발굴내역

세무과장

㉑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발굴 내역	구분	징수 월일	전수	포상금
	소속	직위 (주소)	성명						

190mm×268mm(신문용지54mm)

577: (대)